

# 자동차담보대출 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 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하나카드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 제3조 (대출의 실행)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하나카드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하나카드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E-MAIL), 서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제 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본조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하나카드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⑥ 하나카드는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E-MAIL), 서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 제5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6조 (소유권 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하나카드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③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유 및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 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제9조 (결제방법)

- ① 하나카드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하나카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 ①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카드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음으로 인하여 하나카드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담보제공)**

자동차 담보제공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본 약정에 따라 하나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보유차량에 대해 하나카드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 및 유지와 관련한 제반 의무사항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13조 (채권양도)**

하나카드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 **제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